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0조에 따라 2021년 5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코스모에코켐㈜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(서초동, 코스모빌딩 5층)

코스모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성 덕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